근로자 안전울림(Safety Call) 운영지침

제 정 2020.11.03

개 정 2022.11.30

개 정 2023.06.13

(명칭변경)

[안전혁신부 042-600-8092]

제 1 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公社)'라 한다)가 작업하는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업무상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공사(公社)의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험상태, 기타위험' 등을 발견하여 안전울림 등록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안전울림'이란 작업 현장에서 '위험상태', '기타위험'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관리주체(주관부서장,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 2. '위험상태'라 함은 공사가 작업하는 현장의 작업환경이 불안전한 상태로 관리되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3. '기타위험'이라 함은 작업절차의 미준수, 위험상태에서의 무리한 작업지시를 말한다.
 - 4. '등록자'라 함은 당해 작업 현장의 '위험상태', '기타위험'을 인지하여 위험에 대한 개선 등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자를 말한다.
 - 5. 주관부서장은 안전품질처장으로 한다.
 - 6.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로서, 본사의 경우 해당 부서장, 지사의 경우 지사장을 말한다.
 - 7. 안전울림 총괄 담당자는 주관부서장이 지정한 안전품질처의 담당자이다.
 - 8. 안전울림 운영 담당자는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지사)의 부서 장(지사장)이 지정한 담당자이다.
- 제4조 (책임과 의무 등) ① 안전울림 주관부서는 '안전품질처'로 하며, 주관부서장은 '안전품질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주관부서장은 안전울림 제도의 관리, 등록자의 안전울림 접수부터 일련의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록자에 대한 통보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관리한다.
 - ③ 주관부서장은 안전울림 접수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안전울림 총괄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총괄 담당자는 주관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현장의 장비, 자재, 시설물 등이 '위험상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울림 제도에 대해서도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⑤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부서장은 작업 현장별 안전울림을 관리할 수 있는 '안전울림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울림에 대하여 신속한 현장 점검 시행, 개선 등의 책임이 있다.
- ⑥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상태를 개선·임시조치 후 재개 할 수 있으며, 부득이 한 경우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의 지휘·감독하에 작업을 할 수 있다.
- ⑦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울림을 이유로 등록자 또는 등록자의 소속회사(협력업체 해당)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 제4조2 (이해충돌방지) ① 안전울림 총괄담당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임을 안전 울림 총괄담당자가 인지한 경우 신고 및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정 의는「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제3조, 그리고 신고 및 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이해충돌방 지제도 운영지침」제4조에 의한다.
 - ② 등록된 안전울림의 당사자 또는 등록된 안전울림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장 또는 위원은 해당 안전울림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안전울림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장 또는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④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 2 장 안전울림 심의위원회

-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① 주관부서장은 안전울림으로 상당한 인명·재산상의 피해예방 및 위험 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해 안전울림 포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안전울림 총괄담당자가 된다.
- 제6조 (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 결정을 위해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 1. 안전울림 사항 중 포상 대상 등록 건의 선정
 -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③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시 별표 2의 안전울림 심의기준을 적용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등록 및 사후관리

- 제7조 (등록방법) ① 공사(公社)가 작업하는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작업 현장의 '위험상태', '기타위험'에 대해 안전울림 제도를 통하여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안전울림은 전용 이메일(내·외부 동일) 또는 전용 유선전화, 전용 홈페이지, 스마트 어플을 유영할 수 있다.
 - ③ 등록자는 안전울림 전용 이메일(내·외부 동일) 또는 전용 유선전화, 전용 홈페이지, 스마트 어플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 제8조 (처리절차) ① 주관부서장은 등록자로부터 전용 이메일 또는 전용 유선전화, 전용 홈페이지, 스마트 어플로 등록된 안전울림 사항에 대해 별표 1의 안전울림 접수 및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②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 접수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조치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 ③ 안전울림 총괄 담당자는 조치 해당사항으로 확인된 안전울림 건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울림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록하여 추적관리 하고, 비 해당사항으로 확인된 등록 건은 등록자에게 사유를 설명 후 종결처리한다.
 - ④ 주관부서장은 안전울림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울림 처리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 ⑤ '안전울림 처리 요청서'를 통보받은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요청서를 접수한다.
 - ⑥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울림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위험상태를 상세히 확인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울림을 개선 및 처리하여야 한다.
 - ⑦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울림에 대해 개선 및 처리가 완료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안전울림 처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한다.
 - ⑧ '안전울림 처리 결과 보고서'를 보고받은 주관부서장은 처리결과 등을 확인한 후 접수 및 종 결처리 하다.
 - ⑨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종결 처리한 안전울림에 대해 처리결과를 등록자에게 통보한다.
- 제9조 (처리기한) ① 안전울림의 처리기한은 '안전울림 처리 요청서' 발행일로 부터 10일(휴일 포함) 이내로 한다.
 - ② 안전울림의 처리과정 중 제1항의 처리기한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주관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처리기한이 연장된 경우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등록자에게 처리기한이 연장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처리진행 상황 등의 통지) ①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울림에 대해 등록자가 처리진행 상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리 진행 상황을 전화·이메일·홈페이지·스마트 어플 등으로 통지한다.

- ②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등록자가 처리진행 사항에 대해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등록자에게 그 처리 진행 상황을 통지할수 있다.
- ③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울림에 대한 처리가 완결될 때에는 그 결과를 등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 결과에 대해 통지를 거부하거나, 무기명, 익명 울림의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 (처리의 예외) ① 안전울림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 1. 공사(公社)의 작업 현장 또는 시설물이 아닌 사항
 - 2. 공사(公社)의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이 아닌 자가 등록한 사항
 - 3. 안전울림의 내용이 막연하여 조치 또는 이행할 수 없는 사항
 - 4. 등록자가 안전울림 내용을 철회하는 경우
 - ② 안전울림 내용이 공사의 작업 현장 또는 시설물 등이 아닌 경우 '관계기관(업체), 안전신문고,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 4 장 포 상

- 제12조 (일반포상) ① 안전울림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거쳐 안전울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안전울림'을 통해 상당한 인명·재산상의 피해 예방이 인정되는 경우
 - 2. 작업 현장의 인명·재산상의 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 지급 한도 등을 결정한다.
- 제13조 (포상금) ① 위원회에서 결정된 포상금은 10만원/건 한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 ②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표 2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받아 지급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포상금 지급을 철회한다.
 - ③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 ④ 등록된 안전울림이 처리기한내 조치될 수 있도록 기여한 직원이 있는 경우, '안전울림 처리결과 보고서'에 부서, 성명, 직급과 기여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때, 포상금은 기여도에 의하여 안전울림 등록자와 배분한다.
 - ⑤ 등록된 안전울림이 정당한 사유없이 처리기한내에 처리되지 않았을시에는, 주관부서장은 해당 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지시서를 발행하는 등 위험요소의 신속한 해결 및 작동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년 11월 03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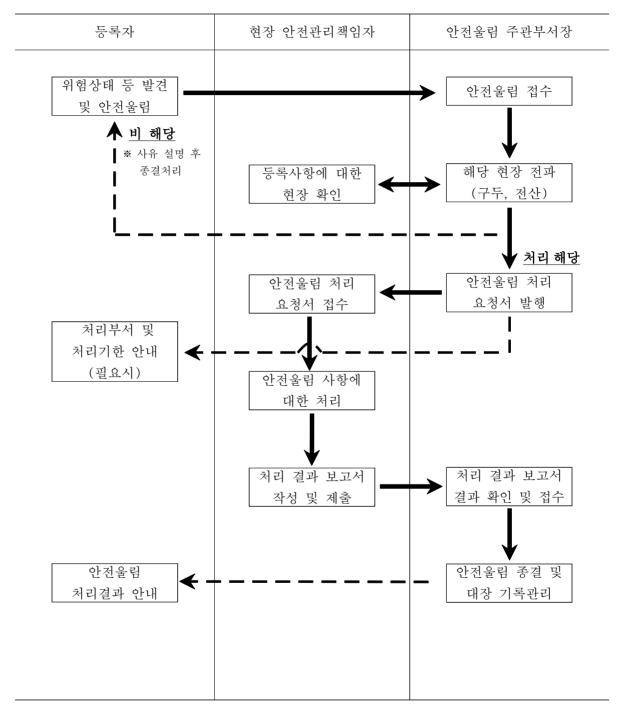
이 지침은 2022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근로자 안전신고(Safety Call) 운영지침)은 2023년 06월 13일부터 '근로자 안전울림(Safety Call) 운영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한다.

[별표 1]

안전울림 접수 및 처리 절차



○ **_ _ _ >** : 등록자 대상 처리

[별표 2]

안전울림 심의기준

1. 항목별 배점표

항목		배점			심의기준			평점				
						예상 인적피해 (1인이상)	사망사고	1개월 이상의 부상 또는 질병	15일 이상의 부상 또는 질병	3일 이상의 부상 또는 질병	3일 미만의 부상 또는 질병	
중대성*	45		45~41	40~36	35~31	30~26	25~20					
		예상 물적피해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5~41	40~36	35~31	30~26	25~20					
긴급성		٥٢	즉시 개선	신속하게 개선	가급적 빨리 개선	계획적으로 개선	필요에 따라 개선					
(시급성)		35	35~31	30~26	25~21	20~16	15~10					
중 귀 시		20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효과성		20	20~19	18~17	16~15	14~13	12~10					
합계	100											

^{*} 중대성의 경우 예상 인적피해와 물적피해가 동시에 있을 경우 둘의 평균점수를 평점으로 적용한다.

2. 점수별 포상기준

점수	95점 이상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9점 이하
금액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2만원	미지급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곳사'라	하다)의	개이저보	수지 민	이용	돗의
Ι.	?! 3/1 /12 0/1(10)	0/1/4	71 11 11		1 11 7	~ 1 ~	\wedge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목적을 위해 수집 · 이용합니다.

O 근로자 안전울림 포상금 지급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사는 근로자 안전울림 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O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공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근로자 안전울림 포상금 지급시부터 3년간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공사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하시는 경우, 실명확인 등 신원확인이 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 안전울림 포상금 지급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	/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동의자 확인 : 성명
 (인 또는 서명)

2.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동의

공사는 근로자 **안전올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본인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근로자 안전울림 포상금 지급시 원천징수 건
-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O 이름, 생년월일, 주소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3년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업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20 년 월 일

 동의자 확인 : 성명
 (인 또는 서명)

안전울림 접수 및 처리대장

저스	저스	접수	드루기	O=] 지 &			처리(해당) 부서	처리기한	ᅱᅴ	-) 그) 7d ə)	
접수 번호	접수 방법	일시	등록자 (연락처)	울림장소 (현장, 위치)	제목	안전울림(접수)내용		처리일자	처리 여부	처리결과 안내일자	비고

안전울림 처리 요청서

안전울림 접수번호		접수일시		
등록자 (연락처)		울림장소 (현장, 위치 등)		
제목				
	안	전울림 내용		
처리부서				
처리기한				
비고				
			요청일자	20

안전품질처장 (서명)

처리부	서 확인
접수일자 :	확 인 자 :

안전울림 처리 결과 보고서

안전울림 접수번호			
제목			
	안전울 ⁻	림 내용	
발생원인			
발생된인 개선 또는			
처리내용			
	처리결	과 사진 I	
	사진 (처리 전)	<i>사진</i> (처리 후)	
	() - ()		
기여한 직원	OO지사(부서) OO부 OOO 직급	 ⁻ 기여도 00%	
비 고			
		보고 일 자(처리 완료일자): 20 . 사업장명:	
		사업상당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서명)
			(1.0)
	안전울림 주	·관부서 확인	
접수일자 :		확인자 : 안전품질처장	(서명)